

陶山에서의 退溪先生の 人格的 教育活動**

渡 部 學*

I

조선조 후기에 있어서 교육의 추이에는 두 가지의 특징적 현상이 보인다. 서원의 祀院化와 향촌서당의 보급·발전이라는 두 가지가 그것이다.¹⁾ 이런 두 가지 현상은 조선조 후기 교육의 본질을 顯型的(phenotypical)으로 나타내는 징후(symptom)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현상 그 자체의 상세한 해명, 말하자면 현상적 해명과 아울러 이들 두 개의 현상간에 어떠한 기능적(functional)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가 묻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의 해명만이 조선조 후기 교육의 실태 해명의 열쇠인 것이다. 그런데 그의 해명은 한국 근대교육의 실태해명에資하는 중요한 작업의 하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본통치 하에 있어서는 祀院化한 서원이 先賢·先烈의 齋場으로 화해서 그의 직접적인 교육기능은 희박화한 데 대해서, 서당이 1917년에는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1동리당 0.9堂이라고 하는 높은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들 서당은 교육내용적으로 보아서 봉건교육의 외피를 장식하면서도 전통적 원리에서서 한국민중에 대한 국사와 국어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

* 武藏대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0호(1976) 게재논문

1) 講談社, 世界教育史大系, 제5권. 『조선교육사』. 渡部執筆通史, 제5장 참조

그런데 위의 「서원의 사원화」라고 하는 현상은 어디까지나 「서원」의 사원화인 이상, 연원형태로서의 「서원」의 본질해명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그의 「서원」이 일정한 계기와 함께 「사원화」해간 양상을 찾아 서당의 발달과의 사이에 서로의 기능적 관계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랬던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의 寺子屋(서당:역자)에 대해서 戰前 일본에서는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이입된 것인지 어떤지, 이입된 것이라고 하면 한국을 경유했는지 어떤지, 경유했다고 하면 어떻게 경유했는지가 학계에서 논거의 씨앗으로 된 일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寺子屋은 일본서민사회의 성립·발전 가운데서 그의 조건에 卽應해서 자주적 自足的으로 성립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³⁾ 한국의 서당에 관해서도 한국의 교육문화 그 자체의 독자적 조건 가운데서 거의 본질을 인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조 후기의 두 가지 특징적인 교육현상은 이것을 서로 피리(isolate)시켜서 추구함이 없이 조선조 후기에 있어서의 교육문화의 전 상황(totality of situation) 하에서 해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개 현상에 관한 지식의 백과전서적 수집(aggregation)은 가능할지라도 조선조 후기 교육 —그것은 한국의 근대교육, 더욱이는 현대교육과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나—의 본질적 실태를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퇴계선생은 조선조 전기에 있어서 서원의 성립에 더욱 깊게 관련된 뛰어난 사상가였다.⁴⁾ 따라서 연원적 「서원」의 성격 해명에는 퇴계사상의 연구를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사상의 연구는 실험론 등의 형이상학적 사상과는 달리 教育實動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근대교육사상의 원천이라고 말해

2) 출처 『근세조선교육사연구』(雄山閣, 1969. 東京)

3) 石川謙著, 『概觀日本教育史』(동양도서, 1940. 동경)

4) 출처, 前掲書, 제4장 『書院의 勃興과 書堂의 變轉』

지는 루소의 사상일지라도 그 개인으로서의 敎育實動은 거의 이것을 缺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의 사상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敎育實動과는 긴밀한 대응관계에 서있었던 것이다. 역으로 페스탈로치의 사상은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많은 모순을 내장해 있었으나 그의 개인으로서의 敎育實動 즉 인격적 敎育實動에 의해서 그 사상전체가 근대교육의 금자탑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선생의 敎育사상도 도산서원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선생의 敎育實動과의 相關相 하에서 이것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하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의 빈약한 어프로우치의 일단을 논술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조에 있어서 서원의 공적 인정의 발단으로 된 것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순흥 소수서원의 사액이다. 그래서 또 다 아는 바와 같이 사액의 발단이 된 것은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한 퇴계선생의 監司 沈通源에로의 건의서 「上沈方伯」書였다. 이 건의서를 연구한 宋兢燮교수의 논문⁵⁾에 의하면 그의 所述 내용은 다음과 같은 10개항으로 대별된다고 한다.

즉

1. 백운동서원의 창건과 그의 관리운영의 경위
2. 서원의 발원에 관한 설명
3. 서원 숭상의 이유 및 각지 서원건립이 지닌 利點에 관해서
4. 서원이 宋의 태종에 의해서 실지로 운용된 史實의 摘示
5. 중국서원의 史實을 인용해서 서원의 성격과 효과를 강조함과 아울러

5) 宋兢燮, 「이퇴계의 敎育사상 — 白雲洞書院賜號請求의 의의 —」
(영남대학교 『東洋文化』 제13輯)

- 러 넓게 국내현실을 통찰 논급
6. 이상의 원리원칙과 事理의 대강의 뒤를 이어서 퇴계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 서술
 7. 沈監司에 대해서 백운동서원의 향구보존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얼마간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하도록 申稟
 8. 퇴계 자신의 거취와 책임 통감을 서술함.
 9. 향교교육 衰微의 현황
 10. 서원 책임자가 교육을 專管해야 할 것에 관한 부언의 십개 항목이다.

위의 諸項 중 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은 견지에서 최후의 제10항을 중시하고 싶다. 「退溪全書」⁶⁾ 所收의 影印 원문에 의하면 이 최후의 항은 「澁謹按故事…」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 자 내려 겸손하게 쓰고 있다. 말하자면 제9항까지는 백운동서원의 보존 고양을 위한 諸 시책 구현을 청하는 공적 논리인 데 대해서 제10항은 퇴계 자신의 신념에 입각한 個(私)적 논리이다.

퇴계에 의하면

「凡書院 必有洞主或山長 爲之師 以掌其教」

라고 하는 것마저 大事의 一件이며 이것마저 더욱이 「尤當舉行」 즉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할 사항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前記의 제7항에서는 서원의 향구보존책으로서 (1) 「頒降書籍」 (2) 「宣賜偏額」 (3) 「給土田藏獲」 (4) 「監司郡守但勾檢 … 而物拘」의 4개조를 들고 있다. 이 4개조 중 처음의 3개조는 말하자면 물적 조건(교육학상으로 말해지는 바의 「외적사항」, exterior)의 정비의 要를 논술한 것이나, 제4조는 서원의 확립을 위한 「내적사항」(interior)의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논술한 것이다. 즉 국가의 官인 지방행정장관은 오직 「作養之方 贍給之具」를 「勾檢」하는 것만으로 「苟令煩條」로써 여러 가지 제

6) 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研究院 『퇴계전서-』, 262頁~.

약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말하자면 서원의 자주자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원의 자주자율을 대폭으로 승인해서 관이 이외의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 거기에 또 하나의 구체적 조건이 요망된다. 그의 요망 조건을 퇴계는 제10항의 按文에서 앞의 제7항 제4조를 붙여서 논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요망 조건이 말하자면 책임있는 「洞主或山長」을 두고서 이를 스승으로 확정하고 이의 스승이 교육의 일체를 손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의 洞主 山長을 스승으로 해서 교육을 專管토록 한다는 것에는 퇴계에 의하면 더욱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필수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一世師表」됨에 상응할 만한 「人才德望」이 卓然한 인물을 선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은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견지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을 얻지 못할 때는 「反有損於書院」이기에 서원이 자주자율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山長에 그런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퇴계의 서술은 그의 구성에 있어서 극히 논리적이며 더욱이 그 자신의 교육에 관한 신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그것에 통일적으로 응축·귀환시키고 있어 그야말로 체계적이다.

西厓 柳成龍의 퇴계선생 『연보』⁷⁾에 의하면 선생이 위의 「上沈方伯」書を 監司에 상정한 것은 명종4년 己酉(1549) 선생 49세의 12월이었다. 선생은 그 前年 정월에 단양군수를 拜受하고 이어서 同 10월에 풍기군수로 拜受해서 임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중시하는 것은 이 건의서를 상정하고 곧

「以病三辭于監司請解官 不待報而歸」

즉 선생은 「上沈方伯」書の 말미 按文에 기술한 것과 같은 師道를 스

7) 同前 『퇴계전서 4』 年譜 713頁~8.

스로 실천하려고 한 것이었다.

선생이 官을 사직하고 귀향한 때의 양상을 학봉 김성일 撰의 「實記」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其在郡 淸風灑然 無一點私累 還家只有數擔行而已」

연보에는 그것에 붙여

「惟書籍數篋而已」

라고 기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관직에 있어서 무엇인가 利를 구할 수 없기에 이것을 亂해서 數篋의 서적을 주로하는 數擔의 行李만을 가지고 귀가한 것이다.

III

그래서 귀향한 선생은 翌 庚戌의 해에 50세로서 그 2월 「栖居于退溪之西」라고 한 「寒栖庵」을 세운 것이었다. 그곳은 本宅의 인접지이었으며 傍을 흐르는 溪에 임해서 精舍를 만들고 이것을 寒栖庵이라고 이름 붙여 泉을 끌어들여 光影塘이라고 하며 梅나 柳를 심어서 三逕을 열고 前庭의 巨石을 彈琴石이라고 이름붙이며 溪의 동측 정면에 溪를 걸쳐 있는 巨巖을 古藤巖이라고 이름붙였다. 그 뒤 丙辰年에 여기에서 선생을 拜한 金誠一은

「在右圖書 焚香靜坐 翛然若將終身人不知爲官人也」⁹⁾

8) 同前書. 244頁~

9) 同同書. 언행록 권3 201頁

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遷居 이래 그와 같은 생활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된다.

연보에는

「堂名靜習 讀書其中 有詩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
有省 自是從遊之士日衆」¹⁰⁾

이라고 있으나 名利的 세상으로부터 身을 물리어 학문의 진보가 없음을 自憂해서 日日自省 存養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讀書·存養에 전심하는 그 가운데서 선생이 확신한 「師道」는 스스로 확립되고 「從遊의 士가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즉 가르침을乞하는 제자들이 저절로 거기에 모였던 것이다. 앞의 按文 중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사람됨이 없는 스승의 밑에는 「有志之士必望望而去之」로 되어 오히려 서원을 損하게 되는 것을 선생은 힘을 다해 근심하는 것이었으나 이의 寒栖庵에서의 선생의 일상생활 중의 實動은 바로 그의 반대를 스스로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종 8년 癸丑(1553) 선생은 「辭謝乞更擇任師長」임에도 불구하고 大司成을 拜하였으나 그때의 「諭四學師生文」에¹¹⁾ 있어서 「今之學校 爲師長爲士子或未免胥失其道」라고 하면서도 新學의 소년들이 「師生之分」에 昧한 것은 「夫豈獨諸生之過哉」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諸生의 自省을 구함과 아울러 스승의 측에 있어서도 스스로 깊이 살피어서 사도를 확립 실천해야 할 것을 암암리에 엄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寒栖庵에 있어서 선생 자신의 日日的 철저한 인격적 實動에 立言이었으며 口舌의 美辭는 아닌 것이다.

寒栖庵에 관해서 선생 자신은 그의 「陶山雜詠並記」중에서

10) 同前書. 121頁

11) 同前. 『퇴계전서 2』 338頁

「始余卜居溪縛屋數間 以爲藏書 養拙之所」¹²⁾

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의 「藏書養拙之所」인 寒栖庵에서의 「臨流日自省」의 생활을 실천한 그 선생 하에 가르침을 청해와서 배우는 자가 日益漸多한 것이었다.

이 寒栖庵은 곧 석학인 뛰어난 학자가 재향해서 日日 학문연구와 自省修養에 종사해서 거기에 자연히 확립된 그의 師道下에 각지로부터 笈을 걸머지고 가르침을 받으려 오는 자가 연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藏書養拙書堂의 전형인 것이다.

선생은 그 후 후술한 것처럼 陶山으로 옮겨서 陶山書堂을 경영하기에 이르르나, 이 陶山書堂은 바로 寒栖庵의 연장이며 역시 전형적인 藏書養拙書堂이고 이것이 도산서원의 핵심적 계기를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서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은 그 성립의 근본적 계기를 달리하고 있으며 교육사학적으로는 도산서원이야 말로 조선조 서원의 전형적인 연원형태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IV

퇴계선생은 위의 寒栖庵에서 「更謀遷而得得地於山之南」¹³⁾하였다. 그것은 명종 12년 丁巳(1557년) 선생 57세의 때였다. 이 이후 명종 22년 丁卯(1567) 召命入都할 때까지의 10년간은 퇴계사상의 체계적 완숙기에 해당하며 퇴계사상 연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이나 동시에 이의 10년간은 선생의 인격적 교육 實動이 가장 현저히 발현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선생은 이때에 배운 대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배우는 眞箇師道를 스스로 체현한 것이었다.

12) 同前 『퇴계전서 1』 100頁

13) 同前

「陶山雜詠並記」에는

「自丁巳至于辛酉五年而堂舍兩屋粗成 可棲息也」¹⁴⁾

라고 있으며 이의 堂을 「陶山書堂」, 이의 舍를 隴雲精舍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연보에는 이 전년의 庚申年(1560)에 「陶山書堂成」이라고 있으며 1년의 틀림이 있으나 선생 자신에 의하면 「可棲息也」라고 하는 상태에까지 완성한 것은 辛酉年(1501)이었을 것이다. 연보의 해설기사에 의하면 이 도산서당이 이룩되면서부터 선생은 「自是又號陶翁」이라고 하기에 庚申年은 선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기가 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선생은 이 해 11월에 「答奇高峯書辨四端七情」에 의해서 퇴계 독자의 理氣說을 수립한 것이었다. 신유년의 도산서당 성립 후

「先生每之陶山 常居玩樂齋 左右圖書 俯讀仰思 夜以繼日 家貧疎糲 僅充而攻苦食淡 他人視之疑其不堪 而先生裕如也 蓋先生」¹⁵⁾

이었다고 연보에 기술하고 있다. 「每至陶山」이었기 때문에 아직 도산서당에 정주한 것은 아니고 庚申年 中은 산의 裏側에 해당하는 寒栖庵에서 도산서당에 통학한 것이라고 추측되나 「俯讀仰思 以夜繼日」이라고 하기 때문에 夜分에 이르기까지 종일 독서와 사색에 전심한 것이다.

농운정사의 공사가 이룩된 것도 이 庚申年 중이었다고 생각되나 辛酉年 3월 「築節友社」라고 있기에 아마 서로 함께 공을 들인 것일 게다. 「從遊之士」들도 庚申年 중에 농운정사에 자면서 群居肄業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陶山의 땅은 재향의 석학이 스스로 終日終夜 「俯讀仰思」하고 그 밑에서 수많은 「從遊之徒」가 群居肄業하는 찬연한 「師道教育」의 땅으로 되어 있었다.

14) 同前書. 101頁

15) 前揭年譜. 129頁

연보의 이 「陶山書堂成」의 條 말미에 다음과 같은 一文이 있으나 필자는 이것에 강한 주의를 야기시킨다. 즉

「其後 學徙於精舍之西築室以處 名曰亦樂 取論語自遠方來之義」¹⁶⁾

이것이 亦樂書齋이었으며 『禮安郡邑誌』에는 이의 역락서체에 관해서

「在精舍西短麓上 鄭科爲其子士誠受業而營築 扁額亦李滉手書」¹⁷⁾

라고 기술하고 있다.

大山 李象靖 撰의 「芝軒鄭公行狀」¹⁸⁾에 이것에 관한 서술이 있다. 즉

「(前略) 許年十七 謁李先生于陶山 仍請業 先生曰 敬是入道之門 必以誠 然後不至於間繼 仍命名與字手書以贈之 右尹公爲公構小齋於陶山 使之居 先生 名其齋曰 童蒙…」

鄭士誠은 「嘉靖乙巳 12월 29일생」이기 때문에 인종 원년 乙巳(1545)에 태어났으므로 퇴계선생에 배알한 17세 때는 도산서당을 「粗成」한 辛酉年이어서 이 해에 右尹公 鄭科가 퇴계선생으로부터 「士誠」이라는 이름을 手書해서 주는 것을 받기 위해 「童蒙齋」를 영축하고 여기에 살게 하면서 선생에게 배우게 한 것이다. 당시의 도산서당이나 농운정사에 출입을 허가받은 자는 백운동서원의 예에 의하면 司馬初試 합격 이상의 者이이었다고 생각해서 초학 입문의 芝軒 鄭士誠은 이의 童蒙齋에 기거한 것일 게다. 鄭士誠은 戊辰年(1568) 24세로써 진사시에 합격하고 있기에 아마도 이의 전후에 퇴계선생에 의해서 亦樂書齋라고 명명되어 手書의 扁額을 받아서 이미 초학입문자의 起居所로서는 없어지고 각지로부터 퇴계선생의 학덕을 흠모해서 가르침을 청해서 오는 儒士들

16) 同前

17) 『安郡邑誌』 (규장각藏本, 제10845호) 古跡條

18) 影所本, 『大山先生文集, 하』 1028頁

의 숙소로 되었을 것이다.

鄭士誠은 후에 「築室芝山之陽 因自號芝軒 遠近學者多就質焉」이라고 말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퇴계선생이 記를 撰하며 院規도 정해서 준 伊山書院이 「故郡守琴候椅所創」인 「養正堂」을 其側에 侈構해서 이것을 수렴한 것¹⁹⁾과 마찬가지로 후일의 형태는 변화했으나 鄭料營築 鄭士誠就學의 「童蒙齋」가 도산서원에 수렴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실로 학덕겸비의 학자의 「藏書養拙之所」에는 자연히 많은 從遊之學徒가 몰려와서 고도의 교육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초학입문의 시설도 또한 거기에 흡수되어 수렴되어 간다고 하는 하나의 교육법칙성을 보이는 것이다.

퇴계선생의 도산에 있어서의 인격적 교육 實動은 실로 조선조적인 특수한 구체적 형태에 있어서 한 교육의 보편적 법칙성을 현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 섭 譯)

19) 註 4)번과 같음